[별표 1] <개정 2014.11.4.>

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(제84조제2항 관련)

1.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.

매 입 대 상	매 입 금 액
가.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	공사도급계약 금액
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	의 100분의 3
결한 자	
나.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, 제9호의2, 제10	시행면적 3.3제곱미
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	터 당 20,000원
하는 자	
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	토지형질변형 허가
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	면적 3.3제곱미터
	당 20,000원

비고: 시·도는 위 표의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2.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의 면제

가.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

- 1) 국가기관: 「대한민국헌법」·「정부조직법」,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
- 2) 지방자치단체: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
- 3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다음의 공공기관
- 가)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- 나) 삭제 <2009.9.21>
- 다)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- 라)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
- 마) 「한국관광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관광공사
- 바)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
- 사)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
- 아)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

- 자)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차) 「한국광물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
- 카)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
- 타) 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
- 4) 지방공기업: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- 5) 주한 외국정부기관: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, 국제기구(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),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(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)
- 6)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
- 나.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다.
 - 1)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, 제9호의2,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면적
 - 2) 영농 및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
 - 3)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
- 4)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
 - 가) 「주택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(공용면 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) 이하인 주택(임대를 목적 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)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
 - 나) 가)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(기부채납을 포함한다)되는 토지의 면적
- 5)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
- 다.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상당액만큼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각각 면제한다.
- 라. 시·도지사가 천재지변,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.

3. 도시개발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. 다만,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,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.